

서대문구의회 기간제근로자(속기보조) 채용공고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2026년도 제31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(7월)동안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(속기보조)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29일

서대문구의회 의장

1 채용분야 및 주요업무

채용분야	채용인원	근무기간		담당업무 내용
기간제근로자 (속기보조)	3명	근로계약기간 (제317회 임시회)	2026. 7. 13. ~ 2026. 7. 24. (12일) 실제근무기간: 9일	상임위원회·본회의 회의 속기, 회의록 작성 등

※ 채용공고 내용은 의사일정 및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(연장) 될 수 있음.

2 근무조건 및 보수

구분	주요내용
근무조건	- 근무기간 : 2026. 7. 13.~ 7. 24. (총 실 근무일 9일) - 근무시간 : 평일 8시간(09:00~18:00), 주 40시간 - 휴게시간 : 1일 1시간(12:00~13:00) 제공 ※ 근무 및 휴게시간은 회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 - 근무일수 : 주 5일
근무지	-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의사팀
보수	- 일급: 112,000원 ※ 2026 서대문구 생활임금(최저기준) 일급 96,968원 ※ 주휴수당 별도 지급
기타사항	-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신고 ※ 본 근로조건은 상여금, 퇴직금 지급 대상사업이 아님

3 제출서류 및 응시자격

구 분	주 요 내 용
제 출 서 류	- 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, 자격증 사본, 개인정보제공·이용동의서,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각 1부
연 령	-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
성 별 및 거 주 지	- 제한없음
필 수 자 격	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의한 한글속기자격증 1급~3급 소지자
우 대 사 항	- 속기관련 공공민간기관 근무경력자 및 전산 자격증 소지자 우대

※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4

채용일정 및 방법

일 정	일 시	비 고
채 용 공 고	2026. 6. 29.(월) ~7. 6.(월)	-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 ‘공지’ 채용 공고 - 속기협회 홈페이지 게재
응 시 원 서 접 수 기 간	2026. 7. 2.(목) ~7. 6.(월)	- 제출방법: 전자우편 (jsh123@sdm.go.kr) 또는 방문 접수 ※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붙임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- 방문접수 09:00~18:00, 중식시간 (12:00~13:00) 제외 (대리접수 가능) - 전자우편 접수시 접수명 : 기간제근로자(속기보조) 원서접수 (지원자 성명)으로 기재 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 검토 후 응시자의 연락처로 접수 확인 문자 발송 (미제출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에는 “합격취소” 처리하고 후순위 예비후보자로 충원)
서 류 심 사	2026. 7. 7.(화) ~ 7. 8.(수)	- 심사방법: 1. 정량평가(70점) -자격증 (1급 40점, 2급 35점, 3급 30점) -국회 및 의회경력 (3개월 이상 30점, 미만 15점) -근무기간 경력은 월단위로 합산 (15일 이상 근무 시 1월로 계산함) 2. 정성평가(30점) -근무기관 경력 및 전문성 고려 ※ 지방의회 속기 업무 근무 경력자 우대
합 격 자 발 표	2026. 7. 9.(목)	-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
오리엔테이션실시	2026. 7. 10.(금)	- 1층 구의회 사무실에서 「근로계약서」 및 「보안서약서」 작 성, 제출서류 원본 확인, 근무요령 등 안내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응시원서 접수 시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받지 않습니다.

-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심시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.

-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※ 합격자 문자 개별 통보 예정이며, 문자 미수신 시 전화로 확인 바랍니다.
 - ※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
- 방문접수한 응시자에 한해,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하단의 청구기간 내 반환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 미반환서류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할 예정입니다.
 - 반환청구 가능기간 :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~180일 내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-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의사팀 (☎ 02-330-8823)